

##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8. 9. 11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. 9. 11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6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98. 9. 16) 상정의결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장상진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국제도시간 원활한 교류추진과 자료 및 정보입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가 무분별한 명칭사용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해와 공관과의 마찰 등을 초래함에 따라 명칭변경을 위하여 조례 개정

#### 나. 주요골자

- 명칭 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)
  - 현 행 :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
  - 개 정 : 부천시 국제자문관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명칭을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?	○ 외국인들에게 정부 공무원, 또는 해외공무원으로 오해를 일으켜 교민 사회의 화합에도 장애를 초래하여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.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- 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-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

의안번호	제17호
의결년월일	98. 9. 22 (제64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9. 1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개정구분 : 부분개정

개정이유

○ 국제도시간 원활한 교류추진과 자료 및 정보입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가 무분별한 명칭 사용으로 외국인들에게 오해와 공관과의 마찰 등을 초래함에 따라 명칭변경을 위하여 조례 개정

주요골자

○ 명칭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)

- 현 행 : 부천시 명예국제협력관
- 개 정 : 부천시 국제자문관

조례개정(안) : 별첨

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 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기타참고사항

○ 관련부서 지시사항(외무부, 내부부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명예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명에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명에국제협력관”을 “국제자문관”으로 하고, 제1조중 “부천시명에국제협력관(이하 “명에국제협력관”이라 한다)제에”를 “부천시국제자문관(이하 “국제자문관”이라 한다)제에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명에국제협력관”을 “국제자문관”으로, 동조 제2항중 “국제협력관련”을 “국제자문관련”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, 제5조 및 제6조중 “명에국제협력관”을 “국제자문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중 “명에국제협력관”을 “국제자문관”으로 “국제교류협력활동”을 “국제교류자문활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명에국제협력관운영에관한조례	.....국제자문관.....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명에국제협력관(이하 “명에국제협력관”이라 한다)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..... .....부천시국제자문관(이하 “국제자문관”이라 한다)제에..... .....
제2조(임무) ①명에국제협력관은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.	제2조(임무) ①국제자문관..... .....
②명에국제협력관은 관내 국제협력관련 방문단의 활동주선, 안내 및 연락 등 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.	②국제자문관.....국제자문관련..... .....
③명에국제협력관은 관내 생산 유망품목의 현지홍보 및 판매망 연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	③국제자문관..... .....
④명에국제협력관은 국내·외 각종 공사(公私) 활동시 시정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.	④국제자문관..... .....

제3조(위촉대상)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조인지역 내 거주 교민으로서 국제교류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~3(생략)

제5조(품위유지)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 부천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초청 등) 시장은 명예국제협력관으로 위촉한 자에게 시단위 행사 등에 초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교통비, 체재비 등을 실비 변상할 수 있다.

제7조(경비지원) 명예국제협력관에게 국제교류협력활동을 위한 자료송부 및 통신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(위촉대상) 국제자문관.....  
.....  
.....  
.....

1~3(현행과 같음)

제5조(품위유지) 국제자문관.....  
.....  
.....

제6조(초청 등) .....국제자문관.....  
.....  
.....

제7조(경비지원) 국제자문관.....국제교류자문활동.....  
.....